##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7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진선미·최혜영·한준호

장철민 · 권인숙 · 윤미향

정춘숙 · 김영배 · 진성준

임종성 · 남인순 의원

(11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가해자들은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짐.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성착취 범죄는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을 통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때문에 관련 범죄의 특성상 온·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짓고 성행위나 성적인 목적으로 친밀감을 쌓는 행위 중 객관적으 로 불법성이 높은 행위들은 구체적 범죄로 규정해 아동·청소년을 적 극 보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SNS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 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위장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7조제 3항).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3조제2항).
- 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접촉하거나 성적 유인 ·권유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 0조제4항제2호).
-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범 죄를 목적으로 접촉 및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등에 접근하고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관련 증거 등을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및 가족 등의 신변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 2 신설).

#### 법률 제 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제15조까지의"를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유기징역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목적의 접촉 및 성적 유인·권유 행위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접촉하거나 성적 유인· 권유행위를 한 경우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 권유행위를 한 경우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같은 조 제3항의 예에 따라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제10조제1항의"를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1조 및 제1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 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에게 접근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
- 2. 위장된 신분을 이용하여 제1항의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 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하는 것
- ②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필요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갱 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갱신 결정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수사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수사를 중지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제1항의 수사상 허용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한 기간은 4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원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배우자·자녀 ·직계존속에게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 등의 피해를 입 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신원을 공개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가. <u>제7조, 제7조의2, 제8조,</u>
죄	<u>제8</u> 조의2, 제9조부터 제1 <u>5</u>
	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	3
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에서 제11조부터 <u>제15조까</u>	제15조까
<u>지의</u>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	<u>지 및 제15조의2의</u>
다.	
3의2. ~ 9. (생 략)	3의2. ~ 9.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생	· 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3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u>유기징역 또</u>	유기징역에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④ ~ ⑥ (생 략)
-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저 대한 간음 등) ① (생 략)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생 략)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 는 행위 등) ① (생 략)
  -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4) ~ (b) (현행과 같음)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u>5천만원</u>
<u>.</u>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5천만원</u>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 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_\_\_\_\_

<u> 3년</u>-----<u>3천만원</u>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목적의 접촉 및 성적 유인·권유 행위 등) ① 19세이상의 사람이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1.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접촉하거나 성적 유 인 · 권유행위를 한 경우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대상 성

   적 유인· 권유행위를 한 경

   수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 항,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 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및 제5항 은 같은 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8조 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 제2항 · 제3항, 제13조제1항, 제 <u>14조제3항 또는 제15조</u>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11조 제5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5 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현행과 같음)

4	 

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 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 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 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1. (생 략)
- 2. <u>제10조제1항의</u> 죄

3. (생 략) <u><신 설></u>


- 1. (현행과 같음)
- 2. <u>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u> 의---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 찰관리는 제11조 및 제1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 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 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 범죄현장(정보 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 에게 접근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 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 행사
- 2. 위장된 신분을 이용하여 제1항의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획득하는 것
- ②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필요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갱신 결정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수사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수사를 중지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제1항의 수사상 허용된 행위를

제65조(벌칙)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⑤ (생 략)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 한 기간은 4개월을 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 조에 따라 수사를 진행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원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① 제25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 는 그 배우자·자녀·직계존속 에게 폭행·상해·협박·명예 훼손·모욕 등의 피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2)</u> -----

-----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사법경찰관리의 신원을 공개한 자
- <u>③</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

# 항까지와 같음)